

풍요롭고 살기좋은

수령조 도시 사하

2012년도

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

- ①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- ②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가. 설치년도 : 1996년

나. 설치근거 :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

다. 설치 및 조성 목적 :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

○ 기금조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'11년도 운용현황		'11년말 조성액	'12년 운용계획			'12년도말 추정액	비 고
수입	지출		수입	지출	증감		
211.9	211.9	204.9	211.6	211.6	△0.3	205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경로당 관련사항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2011년 사업으로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(36%), 어버이날 행사지원(13%), 노인단체 산업시찰지원(30%), 노인의날 행사지원(21%)임.
- 경로당 프로그램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각종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강사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강사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음.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.
- 또한 어버이 날,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은 매년 지원해온 사업으로 참여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이 어려우므로 일반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.
- 노령사회 진입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, 2억원의 기금 적립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을

수행하기가 힘든 실정이며 적립금을 늘려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구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

- 노인복지 시책업무 추진시 국·시비 지원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기금 준치가 필요함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'10년도			'11년도		
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13.2	12.3	93%	6.6	6.6	100%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

-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10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(2,380천원, 119시간) ○ 노인신문 구입배부 (5,180천원, 150개소) ○ 어버이날 기념식 및 노인단체 연합체육대회 행사지원 (860천원, 100명) ○ 노인단체산업시찰 지원 (2,000천원, 200명) ○ 노인의 날 행사지원 (1,360천원, 200명) ○ 경로당 물품구입 (1,500천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(2,380천원, 119시간) ○ 노인신문 구입배부 (5,180천원, 150개소) ○ 어버이날 기념식 및 노인단체 연합체육대회 행사지원 (860천원) ○ 노인단체산업시찰 지원 (2,000천원) ○ 노인의 날 행사지원 (1,360천원) ○ 경로당 물품구입 (605천원) 	93%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1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지원 (860천원, 100명) ○ 노인의날 행사지원 (1,360천원, 200명) ○ 노인단체 산업시찰지원 (2,000천원, 200명) ○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(2,380천원, 119시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버이날기념식 행사지원 (860천원) ○ 노인의날 행사지원 (1,360천원) ○ 노인단체 산업시찰지원 (2,000천원) ○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(2,380천원) 	100%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-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비 고
○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	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육성	○노인복지 시책 추진 ○경로당 관련 지원	

-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(※ 2011년 집행 기준)

- 각종 행사참여 지원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(64%)
- 경로당 관련사항 지원(36%)
-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한 기금사업이 시행되었음

-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09	해당사항 없음	
	'10	해당사항 없음	
	'11	해당사항 없음	
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		해당사항 없음	
기 타		해당사항 없음	

-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
 - 조례에 근거한 노인회 지원, 노인여가 시설관리운영지원, 노인관련 행사 지원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함
-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

사 업 명	'11년 사업비 (백만원)	이 유	불가피성 정도
·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	2.4	재원확보가 어려우며 참여자 수의 변동에 따른 신축적 집행	상
· 노인행사 관련 지원	4.2	당초 계획보다 참여인원이 증가할 경우 예산의 탄력적 집행 곤란, 구 재정상 안정적인 재원확보 어려움	상
합 계	6.6		

4. 사업의 중복성·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 : 해당사항 없음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해당사항 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·운용
- 수입 및 지출실적(과거 3년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09		'10		'11		비고
수 입	합 계	225.3	100%	218	100%	211.9	100%	
	출연금							
	보조금							
	차입금							
	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	
	예탁금상환금							
	예치금회수	218.9	97	212	97	205.6	97	
	예수금							
	이자수입	6.4	3	6	3	6.3	3	
	기타수입 (순세계잉여금)							
지 출	합 계	225.3	100%	218	100%	211.9	100%	
	고유목적사업비	13.3	6	12.3	6	6.6	3	
	용자금							
	인건비							
	물건비							
	예탁금							
	예치금	212	94	205.7	94	205.3	97	
	차입금원리금상환							
	예수금원리금상환							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존치는 필수적임.
- 현재 몇몇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내용이 매년 변동없이 반복되고 있어 새로운 지원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나, 2억원의 재원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- 노인여가시설의 수가 늘어나고 노인들의 높아진 문화·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므로, 추가 기금조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
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가. 설치년도 : 2001년

나. 설치근거 :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

다. 설치 및 조성 목적

-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의 발전 및 권익증진 도모
- 여성단체의 사업 지원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성

라. 목표액 및 조성기간

- 목표액 : 2억원 ▷ 조성완료
- 조성기간 : 2001년 ~ 2008년

○ 기금조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'11년도 운용현황		'11년말 현재액	'12년 운용계획			'12년도말 추정액	비고
수입	지출		수입	지출	증감		
222.5	222.5	214.9	220.9	220.9	△1.6	211.9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○ 주요사업 추진실적

가.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쿠폰지원사업

- '11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여성 43명에 2,580천원(1인당 60천원) 지원
-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에게 출산용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시책에 부합한 사업수행 및 우리구에 대한 홍보 및 각종 시책사업 안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출산여성의 권익 증진

나. 다자녀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

- '10년도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중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해 '10년도 5,731천원, 11년도 4,381천원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(본인부담금 50% 지원)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

- 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도 제고를 위해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관련 사업의 탄력적 수행이 필요하므로 기금 조성 및 운용은 필수적이며,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됨.

2. 사업운영의 성과 :

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'10년도			'11년도		
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6	5.7	95%	8	7.5	94%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-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10년	○ 출산장려지원사업 (6백만원)	○ 출산장려지원사업 (5.7백만원, 209명)	95%
'11년	○ 다자녀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바우처 지원사업 (3백만원) ○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쿠폰 지원사업 (3백만원, 50명) ○ 기타 출산장려사업 (2백만원)	○ 다자녀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바우처 지원사업 (4.4백만원, 136명) ○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쿠폰 지원사업 (2.6백만원, 43명) ○ 기타 출산장려사업 (0.5백만원)	94%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비 고
○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○ 부산광역시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여성복지사업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	○ 여성 권익 증진 사업 ○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○ 국제협력사업 지원 ○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 지원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

- 기금 목표액 2억을 2008년말 현재 조성 완료
- 출산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권익증진에 이바지 함.

○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(예: 신축적 집행, 적립성, 안정성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

사업명	'11년 사업비	이유	불가피성 정도
① 다문화가정출산용품 쿠폰 지원사업	3백만원	안정적 재원확보 및 수혜자 수의 변동에 따른 신축적 집행	상
② 다자녀가정아이돌보미 이용바우처 지원사업	3백만원	출산장려시책에 따른 다양한 사업개발을 통한 탄력적인 운영	상
③ 기타 출산장려사업	2백만원	기타 출산장려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	상
합 계	8백만원		

4. 사업의 중복성·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 : 해당사항 없음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해당사항 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여성권의 증진 사업 및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원조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- 수입 및 지출실적(과거 3년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09		'10		'11		비고
수 입	합 계	215	%	222	%	222.5	%	
	출연금							
	보조금							
	차입금							
	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	
	예탁금상환금							
	예치금회수	206	95.8	215.6	97.3	216.2	97.3	
	예수금							
	이자수입	9	4.2	6.4	2.7	6.3	2.7	
	기타수입							
지 출	합 계	215	%	222	%	222.5	%	
	고유목적사업비			5.7	2.7	7.5	3.2	
	용자금							
	인건비							
	물건비							
	예탁금							
	예치금	215	100	216.3	97.3	215	96.8	
	차입금원리금상환							
	예수금원리금상환							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일반예산으로 여성복지 관련 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은 계속 존치하여야 함
- 2008년말 현재 기금 목표액 달성이 완료되었으나 이자율이 낮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기금 조성액 2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축소가 예상되므로 추가 기금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